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크레딧 및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국민연금공단 업무에 퇴직연금사업 추가>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9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10
다. 관계 기관 의견	13
2.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퇴직연금사업’ 추가	14
가. 개정안의 내용	14
나.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14
다. 검토의견	18
라. 관계 기관 등 의견	20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3
가. 개정안의 내용	23
나. 검토의견	26
다. 관계 기관 의견	27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채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 2)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 3)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
(안 제25조).
- 4)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
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그 의무를 마친 때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고, 자녀를 출산한 때에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자녀 1명당 12개월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51조).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첫째 자녀(12개월)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면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 3. 20.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5. 4. 2.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u>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u>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6개월</u>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u><신설></u>	----- -----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 <단서 삭제> ----- 1. ~ 4.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u> <u>③</u> ----- ----- ----- ----- -----산입되는----- -----. 1. · 2. (현행과 같음)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 2. (생략) <u>③ (생략)</u> <u><신설></u>	<u>② (현행과 같음)</u> <u>③ (현행과 같음)</u> <u>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u> ----- ----- ----- ----- -----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 ----- ----- ----- ----- ----- ----- ----- ----- ----- <u>. <단서 삭제></u>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자녀를 출산한 자는 가입한 때 출산시점을 가입이력으로 인정)에는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u>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u>	1. ---- <u>2명 이하인--</u> <u>자녀 1명마다 12개</u> <u>월을 더한 개월 수</u>	<삭 제>
2. <u>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u>	2. ----- ---- <u>첫째 및 둘째--</u> ----- <u>24</u> <u>개월</u> ----- ----- ----- ---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②·③ (생략) <신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에 1천분 의 1천200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 면 그 초과하는 1년(1 년 미만이면 매 1개월 을 12분의 1년으로 계 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 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2.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매년 기준소 득월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연도별 재평 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1천290-----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 입한 것으로 본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	----- ----- -----. ----- -----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 얻은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3. 20.)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9191호)이 법률 제20903호로 공포(2025. 4. 2.)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확대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었음.

- (군복무크레딧) 종전 6개월까지만 인정되던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도록 하였음.

- (출산크레딧) 종전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던 출산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면서 그 상한(50개월)을 폐지하였음.

□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가 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면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게 하고(군복무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을 그 자녀를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출산크레딧),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법률 제20903호”라 한다)에 따른 군복무크레딧보다 보장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수혜자의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주된 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이 삭제될 경우 연평균 1,300명가량이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현역병 등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592	1,254	1,464	1,294	1,060
현역병	1,408	1,017	1,055	844	636
전환복무자	13	5	-	-	-
상근예비역	62	67	39	34	16
사회복무요원	109	165	370	416	408

주: 전환복무는 2022년부터 배정 중단

자료: 병무청

- 다만,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개정안(자녀당 12개월)이 법률 제20903호(자녀당 18개월)에 비하여 더 불리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 제20903호는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이 상호 조율되어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크레딧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서는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대하면서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4625호), 위성곤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9304호), 백선희의원(18개월, 의안번호 제10576호) 및 이수진의의원(복무기간 전체, 의안번호 제11651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보건복지부는 군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군복무·출산크레딧의 산입시점을 각각 ‘복무기간 종료 시’와 ‘출산 시’로 앞당기는 것은 추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합의를 이룬 바에 따라 혜택이 강화된 군복무·출산크레딧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국민연금 크레딧 뿐만 아니라 병 봉급 인상¹⁾ 등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관 정책 간 정합성과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출산크레딧 확대의 경우에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여타 출산장려 정책 등과의 정합성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병장 봉급(月): ('15) 171,400원 → ('18) 405,700원 → ('23) 1,000,000원 → ('25) 1,500,000원

2.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퇴직연금사업’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1. (생략)	제25조(공단의 업무) ----- -----. 1.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11. · 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나.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

- 법률 제10967호로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²⁾하도록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루는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12년 7월 시행되었음.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³⁾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이라 한다)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이라 한다) 외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이라 한다)와 전통적 방식의 퇴직금제도 등 총 4종이 있음.⁴⁾

- DB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매년 법정부담금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로,⁵⁾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 DC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별 개인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부하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임.⁶⁾
- 중퇴기금이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운용하여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퇴기금 가입 촉진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2월 기준 약 190조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약 382.4조원이 되어, 지난 5년간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는데,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26.4%이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가입률도 약 53.2%로서, 도입률과 가입률은 각각 2015년도 실적에 대비하였을 때 정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

(단위: 조원)

구 분	'18	'19	'20	'21	'22	계	'23		
							DB형	DC형 ¹⁾	IRP ²⁾
적립금	190.0	221.2	255.5	295.6	335.9	382.4	205.3 (53.7%)	101.4 (26.5%)	75.6 (19.8%)

주 1) DC형에는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⁸⁾에 따른 적립금 포함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임⁹⁾

자료: 고용노동부

<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률 및 가입률 >

(단위: %)

구 분	2015	2017	2019	2021	2023
도입률 ¹⁾	26.2	27.2	27.5	27.1	26.4
가입률 ²⁾	48.2	50.2	51.5	53.3	53.0

주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¹⁰⁾

2) 가입대상자(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¹¹⁾) 중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¹²⁾을 추가함으로써 약 1,213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운용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수익률은 약 2.07%로,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수익률(약 6%)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기금적립금을 운용하며 그간 성과를 거두어온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¹²⁾

□ 그런데,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DB형·DC형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위를 국민연금공단에도 부여하려는 것인지 또는 중퇴기금과 유사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대를 전제로 그 기금의 관리·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려는 것인지 등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의 운영 기제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게 될 방식이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은행·보험회사 등으로 열거된 점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퇴

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5.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69면.

기금이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한 제도로써 근로복지공단이 그 운영의 책임을 맡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¹³⁾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퇴직연금사업’을 추가하기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여부 및 방법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우선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04호)은 현행 중퇴기금을 확대·개편한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④ 법 제2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 관계 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및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이를 관리한 조직·인력 등의 별도의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규정된 「국민연금법」에 퇴직연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 관련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법 제25조제10호¹⁴⁾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탁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공적·민간기관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

14)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금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 신중검토

-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우회한 것으로서 각 법률 간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독립적·일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퇴직연금 관리체계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원화하게 되면 각 기관마다 별도의 자산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인력을 갖추는 데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단일 기관에서 운용될 경우 공공부분의 과도한 시장개입 등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업계의 반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금융업계) 수용곤란

-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부분의 사업 위축을 야기하여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과도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며,

2023년 기준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은 13.27%로 국민연금 수익률(13.59%)과 크게 차이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에 따른 구축효과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2022~2023) >

(단위: %, %p)

구 분		DB형	DC형	IRP	전 체	
전 체		'23. 12.	4.50	5.79	6.59	5.26
		'22. 12.	1.51	△ 1.21	△ 3.14	0.02
		증 감	2.99	7.00	9.73	5.24
원리금 보장형		(비 중)	(95.3)	(81.9)	(72.1)	(87.2)
	수 익 률	'23. 12.	4.26	3.87	3.75	4.08
		'22. 12.	1.79	1.94	1.78	1.83
		증 감	2.47	1.93	1.97	2.25
실 적 배 당형		(비 중)	(4.7)	(18.1)	(27.9)	(12.8)
	수 익 률	'23. 12.	9.54	14.44	13.93	13.27
		'22. 12.	△ 5.08	△ 16.92	△ 16.27	△ 14.20
		증 감	14.62	31.36	30.20	27.47

자료: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에서 ‘납부 재개’를 삭제하고, 최대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5. 3. 20.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5. 4. 2.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u>지역가입자</u> ----- ----- ----- ----- ----- ----- ----- ----- ----- -----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u>지역가입자</u> ----- ----- ----- ----- ----- -----본인이 <u>부담할 연금보험료 중</u> - ----- -----36개월-----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 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 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u><신설></u> <u><신설></u>	<u><삭제></u>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의 소득 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금보험료 지원을 받 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 에 따른 연금보험 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 7조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 7조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 원 또는 법률 제8541 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 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의 소득 을 얻을 것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6. 1. 1. 시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아울러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경우 부담금(사용자) 및 기여금(사업장가입자)의 80%까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바,¹⁵⁾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법률 제20903호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이 상호 조율되어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6조를 참고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안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기간의 상한(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현행 제도를 평가하도록 규정¹⁶⁾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제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

16)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